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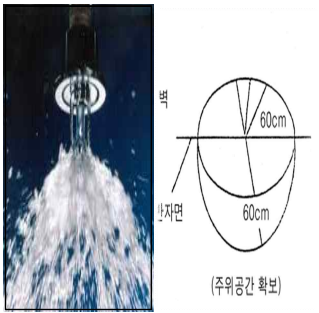


□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작성방법

분야	항목	내 용		
		상태	양호	미흡
[1] 안전 관리 계획 안전 관리자 교육 훈련	(1-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안전계획서 작성됨 안전계획서를 매년 수정, 보완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안전계획서 작성하지 않음 안전계획서 작성 안 됨 수정과 보완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작성 된 경우
	(1-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관리책임관(시설장) 임명 정·부 안전관리자 임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관리책임관(시설장) 임명 안됨 정(正) 소방안전관리자가 임명 안됨 부(副) 소방안전관리자 임명 안됨
	(1-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복도에 피난안내지도 부착 피난방법과 설명이 부착됨 피난장소 및 피난지까지 안내자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난지도 부착 안됨 피난방법 부착 안됨 피난장소 지정 안됨 피난안내자 지정 안됨
	(1-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시설 연2회, 이용시설 연1회 안전교육 실시 수시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실전 피난훈련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방교육 및 훈련 없음 피난훈련 교육 없음 안전교육 하지 않음
	(1-5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, 활용하고 있거나 자체 매뉴얼로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은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도 낮음 안전관리 매뉴얼 전혀 없음
[2] 책임 보험 가입 여부	(2-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(보험가입의무) : 책임보험가입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입 화재외 안전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가입대상: 동법 시행령 제18조 3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미가입
	(2-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(※ 한 개만 가입되어 있어도 미흡)

	(2-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배상책임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 사망 시 1인당 8천만원 이상 보상한도 설정 시 양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사망 시 1인당 8천만원 미만 보상한도 설정시 미흡(즉시 조치 요망)
	(2-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한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지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사고 당 보상한도가 1억 또는 2억에 가입된 시설은 상향 가입 유도(다만, 시설입소자 및 이용자 등 시설규모 고려)
③ 소방 안전 관리	(3-1)	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동확산소화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복도에 소화기 설치 ◆ 소화기가 위치한 위쪽에 소화기 문자로 표시 ◆ 바닥면적 33㎡ 이상 각 실별로 소화기 설치 ◆ 소형소화기는 20m 간격으로 비치 ◆ 대형소화기는 30m 간격으로 설치 ◆ 부엌이나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복도에 소화기 없음 ◆ 각 실에 소화기 없음 ◆ 소화기 표시는 있으나 소화기 없음 ◆ 지정된 간격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◆ 부엌이나 보일러실에 자동확산소화기 없음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화기 압력지침이 녹색에 위치하고 있음 ◆ 머리 쪽으로 들어 흔들면 밀가루 흐르는 소리가 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화기 압력지침 녹색을 벗어남 ◆ 내부 약제가 굳어있으면 들어 올릴 때 돌 흐르는 소리가 남
	(3-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되어 정상작동 됨 ◆ 진원 표시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음 ◆ 설치근거 :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5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안됨 ◆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으로 작동 안됨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되어 정상작동 ◆ 진원표시등에 불이 켜져 있음 ◆ 소방서와 바로 연결되어 있음 ◆ 설치근거 :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5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으로 작동 안됨 ◆ 소방서와 연결 전화선이 없음 ◆ 화재신고 녹음 내용이 불량한 상태



[3] 소방 안전 관리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◆ 스프링클러 헤드가 모두 잘 보임 ◆ 설치근거 :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5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의무 시설임에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안됨 ◆ 스프링클러 헤드가 함몰되어 있거나 살수 반경에 장애물 존재 등
(3-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화전 함 내 호스가 들어 있음 ◆ 호스 1개 길이는 25m 이어야 함 ◆ 보통 길이 15m의 호스 2개가 들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옥내소화전 함 내에 호스가 없음 ◆ 소화전함 안에 관창이 없음 ◆ 소화전함 내 밸브가 열리지 않음 ◆ 밸브를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음
		<p>관창: 호스 끝에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기구</p>	 <p>소화전 밸브: 호스에 물을 방출하기 위하여는 기구</p>
(3-4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화전 주변에 장애물 없는 경우 ◆ 장애물로 소화전함 가려진 부분이 없는 경우 ◆ 소화전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장애물로 소화전함이 가려진 상태 ◆ 소화전함과 호스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
(3-5)	 <p>스프링클러 헤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스프링클러헤드 중심으로 바닥면을 향하여 반경 60cm 이상의 공간 확보되어 있는 경우 ◆ 실내장식 공사로 스프링클러헤드가 가려진 부분이 없는 경우 ◆ 살수반경: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질 때 물이 닿은 구역의 반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헤드 중심으로 바닥면을 향하여 반경60cm 이상의 공간 확보가 안 되는 경우 ◆ 헤드가 인테리어 공사로 가려진 경우 ◆ 물이 쏟아질 때 골고루 퍼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설치된 경우
	 <p>(주위공간 확보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의 천장에 누수 흔적이 없는 경우 양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천장 주변에 누수에 의한 물 자국이 있는 경우 ◆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의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는 경우 미흡

(3) 소방 안전 관리

<p>(3-6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전면의 모든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있음 ◆ 교류전원과 정상전원(직류 24볼트)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는 경우 ◆ 화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전면의 일부 스위치가 눌러져 있음 ◆ 공급전원과 교류전원과 비정상전원 등이 꺼진 상태 ◆ 화재 표시등에 불이 켜져 있음(오작동) ◆ 수신기 표시등에 불이 꺼진 경우
<p>(3-7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 받음 ◆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상황 소방서로 통지함 ◆ 녹음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여부 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화재신호 얻은 후에 소방서로 화재신호 보내지 못하는 경우 ◆ 녹음상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◆ 감지기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
<p>(3-8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유도등은 상시 점등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◆ 유도등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 식별이 쉬운 상태임 ◆ 출입구 위쪽에 설치되어야 함 ◆ 거실유도등은 높이 1.5m 이상 위치에 설치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평상시에 등이 꺼져 있으면 안됨 ◆ 유도등 주변에 장애물로 가려지면 안됨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통로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함 ◆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됨 ◆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전기료 때문에 유도등이 꺼져 있으면 안됨
<p>(3-9)</p>	 <p>비상조명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비상조명등 위치표지가 부착된 곳에 비상조명등 비치 ◆ 비상조명등을 작동하였을 때 불이 켜지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비상조명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
	 <p>휴대용 비상조명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비상조명등 위치표지가 부착된 곳에 비상조명등 비치 ◆ 비상조명등을 작동하였을 때 불이 켜지는 경우 양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비상조명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◆ 비상조명등을 꺼낼 때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 불량임
<p>(3-10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신체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 설치 ◆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서는 승강식피난기가 적응성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장애인 시설에 구조대가 설치된 경우는 적응성 없음 ◆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는 완강기나 피난사다리 설치된 경우 적응성 없음


<p>(3-11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설치된 피난기구 고정 장치에 힘을 가하였을 때 움직임이 없는 경우 ◆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설치된 피난기구 고정 장치에 힘을 가하였을 때 움직임 있는 경우 ◆ 설치위치 표시 및 사용방법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
<p>(3-12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문이 잠겨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기계실 등 접근 제한 장소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
<p>(3-13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된 경우 ◆ 소화작업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◆ 화재시 소화 작업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
<p>(3-14)</p>	 <p>물 탱크 오버플로우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조의 옆면에 수위계가 있는 경우 수위계 전체 길이의 4/5 이상유지 ◆ 수조의 맨홀 뚜껑을 열어 관찰하였을 때 물의 수위가 오버플로우관(over flow) 유입구 최소높이까지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위계 전체 길이의 4/5 이하인 경우 ◆ 맨홀 뚜껑을 열어 관찰하였을 때 물의 수위가 오버플로우관 유입구 최소높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
<p>(3-15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옥내소화전 1개당 130리터/분 소방용수 필요함 ◆ 옥외소화전은 350리터/분 필요함 ◆ 스프링클러는 80리터/분 필요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옥내소화전 경우 최대 5개로 계산하여 130*5=650리터/분 수량 확보해야 함 ◆ 옥외소화전 경우 최대 2개로 계산하여 350*2=700리터/분 수량 확보해야 함
<p>[4] 전기 안전 관리</p> <p>(4-1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사진과 같이 설치된 경우 양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사진과 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눌렀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배선차단기 설치되지 않음 ◆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시험버튼을 눌렀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		

	(4-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◆ 600V 이하 분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누전차단기 설치되지 않음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냉난방설비의 플러그는 전용콘센트에 삽입되어 있어야 함 ◆ 일반가전기기 사용 시 문어발식 사용이 없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음 ◆ 노출된 전선에 피복이 훼손되어 있음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노출전선 중 전선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노출전선 중에서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있는 경우
⑤ 가스 안전 관리	(5-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험스위치를 작동하여 누설차단밸브가 작동하는 경우 ◆ 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가 모두 설치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험스위치를 작동하여 누설차단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◆ 가스관련 경보기 및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
	(5-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시 점검을 받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시 점검을 받고 있지 않음
	(5-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저장용기와 화기취급 장소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, 용기 보관 장소에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저장용기와 화기취급 장소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음 ◆ 용기 보관 장소에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
⑥ 겨울철 긴급 재난 관리	(6-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사회복지시설 외형을 정기적으로 육안 점검 함 ◆ 시설 내 위험물 저장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 함 ◆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경우 수시 점검함 ◆ 가건물을 폭설에 대비해 시설물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폭설을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음

[6] 겨울철 긴급 재난 관리

<p>(6-2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폭설로 긴급 대피를 위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있음 ◆ 피난안전지역까지 안내할 피난도우미를 지정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피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◆ 피난을 안내 할 도우미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
<p>(6-3)</p>	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폭설로 두절을 대비하여 비상식량과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음 ◆ 난방을 위한 비상연료를 준비하고 있음 ◆ 연탄이나 목재연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비상식량이나 의약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음 ◆ 비상연료 준비가 안됨 ◆ 교통두절에 대한 연료의 긴급 수송대책 없음
<p>(6-4)</p>	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폭설 제설장비를 갖추고 있음 ◆ 제설작업차량, 적사함, 염화칼슘, 모래주머니, 삽, 빗자루 등을 갖추고 있음 ◆ 기타 폭설 제설대책을 갖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폭설 제설에 대한 대비나 대응장비가 준비되지 않음 ◆ 제설 관련 도구가 준비 안됨 ◆ 긴급 폭설에 대한 대응책 마련 안됨
<p>(6-5)</p>	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관할 소방서 및 지자체와 재난극복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◆ 관할 재난기관과 수시로 연락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재난대비 관련 협력체계가 없음 ◆ 연락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◆ 지자체 담당자를 알지 못하고 있음
<p>(6-6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난방용 보일러에 대한 동파대책이 마련되어 있음 ◆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된 시설은 집열판 관리를 잘하고 있음 ◆ 온수 탱크 등에 대한 보온관리가 잘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난방기거나 기구에 대한 동절기 관리가 안 되고 있음 ◆ 보온재를 사용한 보온대책이 마련되지 않음

	(6-7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겨울철 난방용 전열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◆ 전기안전에 관한 교육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전열기 사용 교육이 없음 ◆ 전기안전교육이 없음 ◆ 난방기기 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음
	(6-8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가스중단에 대비한 비상연료를 준비하고 있음 ◆ 도시를 벗어난 시설에서 연탄이나 목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비상연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◆ 정전이나 가스중단에 대비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
[7] 자연 재난 관리	(7-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재난발생 정보 수집절차가 계획되어 있음 ◆ 항상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 ◆ 재난방송 청취와 전파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보수집 및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◆ 재난정보 전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◆ 재난정보 수집절차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
	(7-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관련 소방서 및 지자체와 재난극복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◆ 관할 재난기관과 수시로 연락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재난대비 관련 협력체계가 없음 ◆ 연락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◆ 지자체 담당자를 알지 못하고 있음
	(7-3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훈련하고 있음 ◆ 피난장소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음 ◆ 피난장소까지 안내자가 지정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피난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음 ◆ 피난안내자 없음 ◆ 피난 후 도착지가 없고, 인원점검을 담당하는 직원 없음
[8] 건강 관리 대책	(8-1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긴급 감염병에 대한 신고체계가 준비되어 있음 ◆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조치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긴급 감염병에 대한 신고체계나 구체적인 대책 수립 안됨 ◆ 긴급 환자 발생 시 수습체계 없음

	(8-2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관리하고 있음 ◆ 쓰레기 처리장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 ◆ 쓰레기장 관리가 안되고 있음
--	-------	---	--	---